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 개정근거 및 사유

지방공기업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어 '99년 4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사장추천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기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정비하고 시민들이 인식하기 쉽고 사용하기 편리한 명칭으로 공사명을 변경하려는 것임.

■ 지방공기업법령의 조례관련 주요 개정사항

- 행정자치부장관의 권한인 정관변경인가권, 사장과 감사 임면에 대한 승인권이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이양됨(법 제56조, 제58조)
- 지방공사·공단 사장은 사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토록 하고, 사장추천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하도록 함(법 제58조).
- 지방공사·공단의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득하도록 한 것을 보고사항으로 하고 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은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법 제65조)

■ 주요 개정내용 및 검토결과

- 첫째, 공사명칭을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에서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로 하고 이에 따라 조례명도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설치조례」를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로 한 것은 우선 社名을 시민들이 쉽게 인식하고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며, 조례명은 조문 구성이 공사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정하여져 있으므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둘째, 정관 변경시는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안 제5조제2항),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안 제7조제2항), 공사의 사장은 사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안 제8조제1항), 감사는 시장이 임명한다(안 제10조제1항), 공사의 대행사업과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제21조의2),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안 제18조), 결산에 관한 사

항(안 제19조), 계리의 원칙에 관한 사항(안 제20조), 사장추천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장 제25조 내지 제31조), 업무상황공표에 관한 사항(안 제33조),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안 제34조)은 지방공기업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적정하다고 생각됨.

- 셋째, 정관에 기재하는 사항으로 이사회 구성과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신설규정(제5조 제1항 제6호, 제12호), 임원 수는 이사 7인과 감사 1인을 둔다를 사장 포함 11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를 두고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와 이사는 상임과 비상임으로 구분하고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100분의 50미만으로 한다(안 제9조)라고 규정한 것은 정관의 기재사항을 충실히 하고 이사회 운영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짐.
- 넷째, 공사는 서울특별시 재산이 필요한 경우 무상사용할 수 있다라는 규정(현행조례 제25조)은 공유재산에 대한 일반법인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5조 및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저촉되며 지방공기업법에도 이에 대하여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삭제한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됨.
- 다섯째, 시장의 공사업무 감독에 있어 임직원의 보수규정(연봉제규정, 복지후생규정 포함) 및 퇴직금규정(명예퇴직규정 포함)을 시장승인 사항으로 추가(안 제23조제2항 제3호)한 것에 대하여는 금년도에 개정된 지방공기업법령이 매 사업년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확정과 성립된 예산의 변경을 개정 전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를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하고 공사는 이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였으나 임직원의 보수와 퇴직금에 관한 부분은 예산편성 전에도·사간 단체협약이 선행될 것이며, 단체협약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으로 정한 법률적 효력이 있다고 볼 때 시장은 보고된 예산에 대한 시정명령으로 이를 수

정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고, 아울러 타 공사·공단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나, 반면 공사의 책임경영제 확보와 자율성을 부여한다는 입장에서 살펴보면 오히려 조례로써 규제를 강화하여 자율경영권을 침해하는 부정적인 면이 있다는 상반된 견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본 규정은 궁극적으로 어느 측면이 공사가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기여도를 제고할 수 있는가를 판단하여 정해져야 한다고 보여짐.

○ 여섯째, 본 개정조례안 중 수정 및 자구정리를 필요로 한다고 생각되는 조문은

- 제13조(이사회) 제3항 단서규정으로 “사장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라고 한 것은 지방공기업법 제75조 규정에 의거,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상법 제390조(이사회 소집) 제1항에 의하면 이사회는 각 이사가 소집하되 다만 이사회 의결로 소집할 이사를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규정되어 있고, 또한 지방공기업법에 이와 관련한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이사의 감독기관이며 이사회 구성원이 아닌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고, 본 규정은 사장신분에 관한 사항이므로 사장이 임명하는 이사가 아닌 공무원인 비상임이사(당연직)로 하는 것이 적절하며,

- 동조 제5항의 이사회 출석 비상임이사에 대한 수당과 여비지급 규정과 관련하여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44조(보수결정의 원칙) 제3항에 의하면 타 법령에 보수에 관한 규정이 없을 시는 어떠한 금전 또는 유가물도 공무원의 보수(봉급, 수당)로 지급될 수 없으며, 지방공기업법에도 별도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동 조항에 “다만, 공무원인 비상임이사의 경우에는 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한다”라는 단서규정을 두어야 하고

- 제21조(손익금의 처리) 제1항의 결산결과 이익발생시 각호로 정한 처리순위 중 “2.

사업준비금 적립, 3. 시 일반회계에 납입”은 지방공기업법 제6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 이익준비금 적립, 3. 서울특별시에 이익배당(일반 회계로 납입)”으로 하는 것이 적법하며

- 제18조(사업계획 및 예산) 제1항 중 “사업년도 40일 전까지”에 있어 사업년도 다음에 “개시”를 삽입해야 하며, 제29조(회의) 제3항 중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지도감독업무”는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로 자구정리를 요함

서울특별시실업대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 서울특별시실업대책위원회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자문기관의 설치)에 근거하여 '98년 8월 20일 제정되어 '99년 6월 30일까지 운영되는 한시기구로서, 조례제정 이후 위원회운영 현황은 위원장 2인(행정1부시장, 정무부시장 : 공동위원장제)을 포함한 20인으로 구성되어 전체회의 13회, 소위원회회의 30회를 개최하였으며,

○ 실업대책본부 및 5개 분과위원회(실업대책, 저소득시민, 생산·일용직, 사무·전문직, 청년·여성소위원회) 구성, 자치구 「취업정보은행」 설치, 도시정보화추진, 단계별 공공근로사업 추진, 주택경기 활성화대책, 공공근로인력 중소기업체 지원, 공공근로사업 모니터링 등 57건의 안전심의를 하였음.

○ 본 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운영기한을 2000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연장하는 것으로 현재 기업체의 구조조정과 신규미취업자의 배출로 인한 고실업률이 계속 유지되고 있어 실업대책 수립·시행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심의·자문이 필요하며, 실업률이 평균수준으로 회복될 때까지 위원회 활동은 필요하다고 보여지므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서울특별시실업대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실업대책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3517호 서울특별시실업대책위원회조례 부칙중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